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구성의 의무】

- ①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학생의 권리와 의무

제4조 【권리】

- ①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②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③ 모든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④ 쉬는 시간·점심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며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 ⑤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 ⑥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 ⑦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⑧ 제7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⑨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
- ⑩ 장애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교육, 게임중독 예방 교육, 사이버(정보통신 이용) 교육, 생명존중교육(자살 예방 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 ⑫ 전담 상담(생활, 진학, 진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⑭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
- ⑮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⑯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

제5조 【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된다.
- ③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 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6조 【의무】

- ①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 ② 교권을 존중할 의무
-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 ⑤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 ⑥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 ⑦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를 준수할 의무
- ⑧ 다른 사람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제2절 교내생활

제7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배부한 [체벌없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중 학생의 사안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특별생활지도를 받아야 한다.

① 등교할 때의 생활

1. (횡단보도 건너기) 횡단보도에서는 교통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건넌다.
2. (등교) 승용차, 자전거 및 퀵보드의 등교를 삼간다.
3. (인사)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다정한 표정으로 먼저 공수 인사를 한다.

② 공부 시작 전, 후의 생활

1. (자리 정돈) 등교하면 학용품을 시간표 순서대로 책상 속에 정돈한다.
2. (아침 자습) 조용히 앉아서 아침 자습 활동을 한다.
3. (방송 청취) 방송 조회 때에는 귀담아듣는다.
4. (역할 분담 활동) 역할 분담 활동을 신속하게 수행한다.

③ 쉬는 시간

1. (준비와 휴식) 휴식 시간에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본다.
 - 다음 시간 학습 준비물을 준비한다.
 - 교실에 있을 때는 조용히 공부하거나 소곤소곤 이야기한다.

④ 점심시간 생활

1. 깨끗이 손을 씻고 배식을 받아 조용히 빈자리에 앉는다.
2. 바른 자세로 식사하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고 골고루 먹는다.
3. (자유 활동) 교실에서 조용히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⑤ 실내 생활

1. (복도 통행) 복도를 다닐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른쪽으로 걷는다.
2. (계단 이용)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사뿐사뿐 걷는다.
3. (실내 언어생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로 말한다.
4. (교실 생활) 교실에서는 되도록 뛰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⑥ 실외 생활

1. (신발 착용) 실외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2. (자연 보호) 휴지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보이는 대로 줍는다.
3. (나쁜 행동 금지) 하급생, 친구에게 짓궂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
4. (출입 질서) 교실에서 실외로, 실외에서 교실로 이동할 때에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⑦ 언어생활

1. (바른 말 사용)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도록 한다.
2. (별명)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별명은 부르지 않는다.
3. (괴성 금지) 실내외에서 괴성을 지르지 않는다.

제8조 【자기주도적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제9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교내의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되며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③ 공공의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항상 제자리에 정리한다.

제10조 【타인 소유물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③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한다.

제11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2조 【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 2. 학교의 폭력 피해 신고함
 - 3. 용인교육지원청 홈페이지→학생 상담 센터→사이버상담
 - 4. 국번 없이 117, 182, 112로 전화를 걸면 24시간 상담과 신고 접수
 - 5.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학교·여성 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으로 신고
 - 6. 대검찰청 학교폭력 신고 전화 1301
-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13조 【이성교제】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 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②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③ 남녀학생 단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14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단, 위험 유발 물품은 제외한다.>
- ②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교사가 교육 목적상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실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④ 학생이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 실시 목적을 거듭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확인한 후,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심의하여 별도의 교육 조치를 취한다.

⑤ 교사는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기장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하에 열람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교 교직원의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제16조 【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컴퓨터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로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한 활동은 자제한다.

⑤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해 대기할 때에는 세이프존(도서실)을 이용하며 정해진 시간에 장소로 이동한다.

제17조 【용의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과 복장은 단정하고 청결하게 유지 및 착용한다.

②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 시 안전 장비를 착용한다.

③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 (높은 굽, 뽕족한 굽, 바퀴 달린 신발 등)

제18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학생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 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 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바로 알린다.

제19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교육과 동아리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동아리활동 및 방과 후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도교사를 둘 수 있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에게 알려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학생이 원하지 않을 때는 불허한다.)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1조 【무단행동 금지】 학생은 등교 후 하교 시까지 부득이한 경우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결과, 외출 및 조퇴를 하고 그러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으로 처리한다.

제22조 【수업】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씨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제3절 교외생활

제23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학기 중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 ⑦ 술, 담배(전자담배), 본드, 가스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 소지,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4조 【보호자의 역할】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에 알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등

제4절 정보통신

제25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시간에만 사용한다.

제26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학생은 학교 등교 시에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가지고 등교할 수 있다. 단, 등교 후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어 보관하고 하교 전까지 교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잃어버릴 시 본인이 책임진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기기는 본 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해당 교육 활동에 근거하여 교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허가한 경우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3장 학생 생활지도

제1절 총칙

제27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⑥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⑦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⑧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⑨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28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9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30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31조 【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34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분리 좌석 (교탁이나 교실 앞 주변 등)	교사의 판단에 의해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교실 뒤 주변 등)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사는 학생의 반성 정도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3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를 거부하거나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정된 장소(개방된 교실 앞문 등) ※분리시간은 수업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교실 내 분리 좌석을 교실 밖으로 이동 가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타인의 신체에 위해가 갈만한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민원면담실, 상담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인솔자가 학생을 인솔하여 교무실로 이동 교무실에서 학생 지도 담당자와 분리장소 확인 후 분리 실시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E 학습터 학습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① 3호 '나'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교실, 민원면담실, 상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점심시간 중 분리할 경우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인솔자: ① 지원인력(행정실무사, 교육청 지원인력 등) ② 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등 학생 지도 담당자: ① 학교장 또는 교감 또는 상담교사 ② (①번 대상자 부재 시)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는 교사(※ 해당 학년 교사 우선 배정) ※ 4호 지도에서의 학생 지도 담당자: 위의 학생 지도 담당자 외에도 담임교사, 학폭담당교사, 학폭담당부장 등 해당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3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 주의와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물품은 수업 종료 후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개악화장품 등	1. 보통의 경우: 1~3 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2. 사안이 중대하여 물품 보관이 필요한 경우: 미정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 【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6조 【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7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39조 【기타 사항】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1절 총칙

제40조 【명칭】 이 규정은 ‘수지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이라 한다.

제4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3조 【선도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4조 【설치】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45조 【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②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46조 【구성 및 직무】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업무 담당교사,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담임교사, 교과전담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 참고사항

②항의 위원 중 기타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한다.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선도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의 지역사회 인사 및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47조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8조 【운영】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49조 【회의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0조 【간사】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1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학생의 선도

제52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53조【선도의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4. 학교 내의 봉사의 예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사들의 업무보조
 - 3) 교재·교구 정비
 - 4)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5) 마음 고르기 프로그램(반성문, 편지쓰기, 독서 치료 등)

② 사회봉사

1. 학교 정규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실시하며 하루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 2)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사회봉사의 예
 -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 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상담 담당교사(부장)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54조 【선도의 기준】 선도 유형별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선도 기준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교직원의 훈계에 불응한 학생	○	○	○	○
	2	수업 시간 중 지속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 부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	○	○	○
	3	교원 외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	○	○	○	○
	4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신체적 위해나 위압을 가한 행위	○	○	○	○
준법	5	도박을 한 학생	○	○	○	
	6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7	학교에 무단침입하거나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10	학생 물품 분리 조치 이후에도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행동하는 학생	○	○	○	○
	11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2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3	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 흡입한 학생	○	○	○	
	14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	○	○	○	○
	15	불온문서(청소년 금지 동영상, 청소년 금지 인터넷 사이트 주소 포함)를 상습적으로 소지,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16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학생(사이버 공간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포함)	○	○	○	
수업 및 평가	17	교원과 강사의 허락 없이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스마트기기를 상습적으로 사용한 학생	○	○		
	18	훈계 조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	○	○	○
	19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20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 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21	미인정 결석이 5일 이상인 학생(체험학습 연장으로 인한 미인정 결석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미인정 결석인 경우는 제외)	○	○	○	
	22	미인정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기타	24	선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	○	○
	25	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	○	○	○	○
	26	교외에서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제55조 【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6조 【재심의 신청】

- ①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57조 【재심의 절차】

- ① 학교장은 제56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 【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④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절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통보

제59조 【사안설명】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 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③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심의 결정시 징계를 병과하여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④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60조 【심의절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 과정 설명
3. 사안 설명 및 질의·응답 : 담당부서,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 담임,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 보호자, 담임, 기타 참고인 퇴장
7.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8. 선도처분 내용 통보 : 선도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61조 【선도 내용의 통보】

- ① 학교장은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선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② 선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3조 【선도 해제】 선도 해제 대상 학생은 생활인권규정 지도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선도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선도 체벌】 학생 체벌은 금한다.

제65조 【보호자의 책임】

- ① 학생이 교내, 교외 활동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가정지도의 소홀한 책임을 진다.
- ② 학부모는 교사의 협조 요청과 상담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행동이 반복될 경우 책임지도 및 상담기관 연계 상담 등 학생생활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6조 【결과 처리·열람】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

제67조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 ① 명칭 : 이 회는 수지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 ② 운영 목적 :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 있다.
- ③ 회원 : 학생자치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으로 한다.
- ④ 구성 : 학생자치회는 학급자치회, 대의원회, 학생자치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68조 【권리 및 의무】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선거 등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9조 【관장사항】 학생자치활동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 연구 활동
- ② 예술, 체육, 취미활동
- ③ 각종 봉사활동
- ④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70조 【학생자치회 임원】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생자치회 임원 : 남·여 구분 없이 회장 1명, 부회장 2명
- ② 학급자치회 임원 : 3~6학년 각 학급별로 남·여 구분 없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해당 학기로 한다.

제71조 【임원의 직무 및 선출】

- ① 학생자치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자치활동 사무를 모두 맡아서 다루고 학생자치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4~6학년(임원 임기 학년도 기준)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학급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제72조 【대의원회】

① 구성

1. 학생회장(부회장), 학급회장(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자치회 회장이 된다.
3.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서로 조직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월 1회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73조 【학생자치운영위원회】

- ① 학생자치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학생부회장 및 집행부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 ② 각 부는 학습·독서부, 문화예술부, 안전부, 환경부, 봉사부 등의 부서를 두고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학생자치운영위원회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
 2. 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3. 그 밖에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4조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 관리 위원회 및 선거일 공고

1. 임원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

임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 라 한다.)는 본교에 재학 중인 4학년(선거 대상 임원의 임기 기준) 이상으로 선거일에 출석한 학생으로 한다.

③ 후보자 자격

1.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2.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3. 1학기 학생자치회 임원은 2학기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은 후보자 및 후보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거권자에게

공개한다.

⑤ 후보자 등록

1. 임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투표인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2. 선관위에 등록을 필한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 사항에 따라 선거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1.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후보자의 가족이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 보호자에게 알린다.

⑦ 투표 및 개표

1. 투표는 선관위에서 작성한 선거인 명부(각반 출석부)에 따라 차례로 질서 있게 실시한다.
2.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기호순에 의하여 작성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3.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하며 선거관리위원이 개표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4.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⑧ 당선자 확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선거 결과 최다 득표자가 회장, 부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한다.
2. 위원회는 당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3.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당선된 후보자가 당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이용하여 당선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 당선이 무효화 되었을 경우 차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5. 단일후보의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한다.

⑨ 이의제기

1. 선거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자 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한다.
2. 이의제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⑨ 보궐선거

1. 학생자치회 임원이 전학 등의 사유로 공석이고, 잔여 임기가 해당 학기의 수업일수 2/3일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보궐선거 미실시로 회장 유고의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하고 부회장이 유고일 경우는 공석으로 둔다.

⑩ 보칙

1.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숙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6 장 학생생활규정 제정 . 개정 절차

제75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6조 【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77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78조 【위원회 운영 및 구성】

-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학생 수가 반드시 1/3이상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해서 교원, 학생회 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여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학부모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선출한다.
- ⑦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 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80조 【개정방법】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설문조사, 스티커붙이기, 토론회, 가정통신문 등)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야 한다.

제81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등 공포하고 정보 공시한다.

제8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83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칙 (2011.5.30 공포)

제1조 【규정 확정】 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0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0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0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0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